

Exploring Community Corrosion During the Compensation Litigation Process

-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

Younghoon Choi⁺, Dong Hwa Le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wangwoon University, 20 Kwangwoon-ro, Nowon-gu, Seoul, Korea

Abstract

This exploratory study aim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compensation litigation process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By reviewing daily newspaper articles issued between December 7, 2007 to June 20, 2016, this study has drawn two categories of factors that would be useful to develop a plausible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litigation and corrosive community. The first category was the contingent factor, including the size of the available compensation fund, supplementary compensation mechanisms, excessive expectation on external information, safety of compensation environment, and trust. The other was the factors intrinsic to the litigation process, including evidence collection burden, claims criteria, understanding of litiga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court decision.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Hebei Sprit Oil Spill, Litigation, Compensation

1. 서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¹⁾ 9년이 다 되어가는 현시점에서도 이 사고의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변화되고(Rho, 2009; Lee & Yu, 2010), 아직도 외상증후군에 시달리고(Lee & Kim, 2010) 지역사회 내 갈등으로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었다는 연구결과들(Park, 2013)과 언론보도(Break News, 2016.2.23; Samnam Ilbo, 2016.10.14)가 계속되고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유발된 1차 재난인 환경재난이 2차 재난인 사회재난으로 전이(Freudenburg & Jones, 1991; Picou, *et. al.*, 2004; Picou, 2009)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재난에서 전이된 사회재난의 양상으로서 문헌은 주민들이 겪는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고통,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역사회 내 갈등의 확산 및 불신의 심화를 든다(Park, 2008). 이러한 지역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지역사회에 보다 장기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민 간의 갈등은 피해지역

⁺ Corresponding author: Younghoon Choi, Tel. +82-2-940-5337, e-mail, cyhoon@kw.ac.kr

1)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Hebei Spirit)호(146,848톤)와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의 해상크레인 부선이 충돌하면서 12,547k1의 유류가 유출되어 약 150km의 해안선이 오염된 사고이다.

의 재난으로부터의 복원될 수 있는 힘을 약화(Kim, 2015)시킴으로써, 환경오염사고를 통해 지역사회를 복원하려는 조치의 효과도 축소시킬 수도 있다.

문헌은 기술적 재난에서 그 성격이 환경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 옮겨가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배상·보상체계를 지목한다(Park, 2008; Park, 2013; Picou, *et. al.*, 2004; Mayer, *et. al.*, 2015). Mayer, *et. al.*(2015)은 미국의 걸프만 Deepwater Horizon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분석에서 보상과정이 지닌 자의성과 제로섬게임이 지역사회를 부식시켰다고 주장한다. Picou, *et. al.*(2004)은 공동체부식현상이 출현하고 지속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소송을 든다. 법원을 통한 소송은 근본적으로 적대적 관계 속으로 피해자들을 위치시킨다(Rosenbloom, *et. al.*, 2015).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 개개인들은 정작 구제를 받으려는 바로 그 과정으로부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게 된다(Marshall, *et. al.*, 2004). 이는 소송과정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 특히 기술재난에서 발생하는 공동체의 부식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소송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Picou, *et. al.*, 2004; Marshall, *et. al.*, 2004).

해양오염사고, 특히 대형유조선으로부터의 유류유출에 따른 해양오염사고는 발생빈도는 비록 적으나 발생가능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형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는 그 피해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협약에서 해양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한도를 증액하게 된 것도 피해 규모가 증대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IOPC Funds, 2016). 우리 학계에서 대형유조선사고에 대한 소송관련 논의가 아직 비교차원이나 보상절차적 차원의 논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그동안 화해중재를 통해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향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에 이르는 대형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이 경우 다시 법원의 재판과정

을 통한 피해보상 결정에 의존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발생하는 지역사회 부식현상에 초점을 두어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보상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식적인 피해보상체계에 초점을 두어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보상을 둘러싼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피해보상체계로서 법원 재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의 영향 중에서 피해 지역사회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공동체부식 또는 공동체 붕괴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공동체부식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을 통한 보상체계의 성격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한 방법론은 2차 자료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한다. 2차 자료는 한국언론재단의 신문검색DB인 KINDS(<http://www.bigkinds.or.kr/>)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 2007년 12월 7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중앙지와 충청지방지를 대상으로 ‘허베이스피리트호’라는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II. 기술재난의 피해보상체계과 공동체부식현상

1. 기술재난과 공동체부식현상

“공동체부식”(corrosive community, community corrosion)이란 기술재난이 가져오는 공동체차원의 영향을 표상하는 것으로 Freudenburg & Jones(1991)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개념이다. ‘공동체부식’이란 기술적 재난의 결과 피해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를 약화시키는 일단의 과정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Picou, *et. al.*, 2004). 본 논문에서 지역사회붕괴 또는 공동체붕괴라는 번역보다는 ‘공동체부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기술재난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내적으로 상당한 긴장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화되어 서서히 공

동체가 약화되는 과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재난으로 인해서 개인은 물론 공동체가 부식되는 이유는 Erikson의 “외상증후군을 겪는 공동체”(traumatized community) 개념을 통해서 잘 설명된다. Erikson에 의하면, 고통을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동체이고, 친밀성의 맥락이 되는 것이 공동체이며, 서로를 묶어주는 전통의 저장소가 되는 것이 공동체이다(Erikson, 1995: 188). 그는 공동체가 심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몸이 손상된 것같이 사회유기체가 손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Erikson, 1995). 즉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묶어 주던 공동체 의식으로부터 표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Erikson, 1995). Erikson은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겪는 외상증후군을 개인적 외상증후군²⁾과 구분하여 집합적 외상증후군(collective trauma)이라고 칭한다. 그에 따르면, 집합적 외상증후군은 사람들을 함께 묶고 있던 결속에 손상을 가하고 지역주민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공동체의식을 손상시키는, 사회적 삶의 기초적 직물에 대한 충격을 말한다(Erikson, 1995). Erikson(1995)의 말을 빌리면, 이러한 집합적 외상증후군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외상증후군이라고 말할 때 보통 떠올리는 갑작스런 충격으로서의 본질이 잘 들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공동체가 더 이상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자아의 중요한 부분이 소실되었다는 인식을 서서히 갖게 된다는 것이 Erikson(1995)이 말하는 집합적 외상증후권의 모습이다.

Picou, *et. al.*(2004)은 공동체부식 현상의 출현은 기술적 재난을 규정하는 특징이라고 말한다. 이는 기술재난이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 사이에 불신과 그에 따른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기술재난은 환경재난을 사회재난으로 전환시키게 되며, 당장의

피해자들과 잠재적 피해자들이 파멸적인 비난전에 가담하고, 나아가 이러한 비난전을 거치는 동안 잠재적으로는 자신들이 비난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Freudenburg & Jones, 1991). 그 결과 기술재난은 피해주민들 사이에서 주장이 경합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어 지역사회의 만성적인 분열상태가 나타나고 적시의 복구 및 회복을 어렵게 한다(Park, 2008; Picou, 2009; Kim, 2015; Dixon, *et. al.*, 2015).

2. 기술재난으로 인한 공동체부식과 보상체계로서 소송

기술재난은 인간 및 기술의 실패로 발생한 재난이라는 점에서, 사고 후의 복구과정에서 손해 배·보상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한다(Picou, *et. al.*, 2004; Freudenburg, 1997). Picou, *et. al.*(2004)은 부식성 있는 공동체가 출현하고 지속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시간소모적인 소송(litigation)을 든다. 소송은 3가지 요소—청구, 분쟁, 법원—를 포함한다. 청구(claim)는 어떤 가치가 매겨진 목적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이고, 분쟁(dispute)은 청구에 대한 저항이며, 그리고 법원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이다(Friedman, 1989: 18). 법원을 통한 소송은 근본적으로 적대적 관계 속으로 피해자들을 위치시킨다(Rosenbloom, *et. al.*, 2015).

Friedman은 법원은 제재로서, 반대편을 괴롭히는 방식으로서,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무기로서 사용된다(Friedman, 1989: 26)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 개개인들은 정작 구제를 받으려는 바로 그 과정으로부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게 된다(Marshall, *et. al.*, 2004). 이는 소송이 이루어지는 소송과정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헌은 재난, 특히 기

2)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개인들이 겪는 외상증후군, 즉 개인적 외상증후군(individual trauma)은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자신이 방어할 도리도 없을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심리상태에 잔혹하게 가해지는 충격으로 정의된다(Erikson, 1995). Erikson에 따르면, 이로 인해 개개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멍한 느낌이나 취약하다는 느낌 그리고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다(Erikson, 1995).

술재난에서 발생하는 공동체의 부식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소송에 초점을 맞춘다(Picou, *et. al.*, 2004; Marshall, *et. al.*, 2004; Mayer, *et. al.*, 2015). Osofsky, *et. al.*(2012)은 BP Deepwater Horizon Oil Spill 사례에서 사고 대응 및 보상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정의 문제는 정보의 부적합성, 환경정의를 기획 단계부터 진지하게 고려하는 데 실패, 유류회사에게 유리하나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제한된 보호를 규정한 법 규정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진 결과라고 주장한다.

기술재난에서 소송이 피해주민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원인은 우선 기술재난에 내재적인 사실정보의 과학적 특성과 관련 당사자의 다수성으로 인한 복잡성(Picou, *et. al.*, 200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고책임 소재를 밝히려는 노력은 사안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의 불확정성, 책임 있는 당사자의 책임 부인, 정부의 비효과적 대응 등으로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따라서 배상 청구 및 지역사회복구 등의 사안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법원의 재판정에 맡겨진다(Picou, *et. al.*, 2004). Picou, *et. al.*(2004)은 기술재난에서는 거의 항상 집단소송과 개인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Picou, *et. al.*, 2004)에서 소송스트레스가 소송에 가담한 피해주민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송스트레스는 생업방해, 배신감, 유류유출 위험 등과 같은 요소들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icou, *et. al.*, 2004). 이는 Galanter가 말하는 ‘법원을 통한 소송이 지니는 방사효과’(radiating effect)에 대한 주장(Friedman, 1989: 26)과도 같다. 즉 소송과정의 효과가 보다 넓은 사회로 물결쳐 나간다는 것이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지금까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공동체부식현상을 초래하는 배상·보상을 주제로 한 연구, 나아가 이를 법원의 소송과정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

구는 많지 않다. 국내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배상·보상체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의 법학적 접근은 대부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배상·보상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 또는 비교법학적 쟁점 등에 초점을 둔 것들이었다. 법리적 쟁점에 대한 연구들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의 구성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Chun, 2008). 비교법학적 쟁점을 다룬 연구는 국제협약,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의 관계를 통한 국내법적 효력을 다룬 논의들이 주를 이룬다(Yun, 2008). 법학적 관점에서의 쟁점을 다룬 문헌들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직후에 예견되는 쟁점들을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러한 쟁점들이 국내의 배상·보상을 둘러싼 소송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유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소송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루지 못하였다.

국내의 배상·보상과정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배상·보상 사정 및 판결이 진행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Kang, *et. al.*(2011)은 허베이스피리트센터의 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배상·보상의 문제점들로서 특정 업종에 대한 낮은 피해인정비율, 그 이유로서 증빙자료 부재 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거래기록 유지 등 사전증빙서류의 구비 등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Park(2011)은 IOPC 국제기금협약 체계 하에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점으로서 추가기금가입 및 국내기금 등 보상기금확보의 문제, 낮은 청구인용율 및 보상의 지연 등 피해주민의 청구 관련 문제, 그리고 국내 어업 및 관광업계의 특유한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문제점들을 확인하여 주었다는 점에 큰 유용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연구에서도 소송과정을 통해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이 소송당사자 중 하나인 피해자들의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루어 주지는 못하였다.

기술재난으로 인한 손해배상·보상소송과 공동체부

식현상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문헌은 주로 Picou와 그 동료들에 의한 해외연구에서 발견된다. Picou 등에 의한 연구(Marshall, *et. al.*, 2004; Picou, *et. al.*, 2004; Picou, 2009)는 소송과정이 지닌 당사자 간 대립구조(adversarial system)에 따른 피해자의 스트레스가 공동체부식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소송이 지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중재·화해가 더 나은 방법이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헌은 소송이 해양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기술재난에 대한 보상체계로서 효과적이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 기술재난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소송은 비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수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예, Picou, *et. al.*, 2004; Marshall, *et. al.*, 2004; Smith & Petley, 2009; Miller & Bornstein, 2013). 예컨대, Miller & Bornstein(2013)은 소송에 관련된 모든 참여자가 스트레스 및 외상증후군을 겪을 수 있는데, 수사나 심판과정 자체가 추가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송이 비록 소송에 가담하는 피해주민들에게 심리정신적 스트레스나 갈등 등의 비용도 있지만 더 큰 금전적 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Issacharoff & Rave(2013)는 BP Oil Spill 보상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소송(집단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평정이라는 프리미엄’(peace premium)을 잃는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더 나은 금전적 보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들은 소송이 투명성, 일관성, 부재자동등처우 등과 같은 이점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 중재화해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얻기 위해 소송에 의존하는 것 역시 일방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득과 실이 존재하는 역설 현상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 자체가 갖는 상대적인 이점(Issacharoff & Rave, 2013)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리고 조정·화해의 과정이 지닌 투명성·공정성 쟁점들을 고려하면, 소송과정 자체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여 기술재난에서 공동체의 부식현상을 설명할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III.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체제와 소송을 통한 보상결정

1. 국제유류오염보상체제와 분쟁해결

국제유류오염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어떤 분쟁이든지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일으킨 사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가의 법원이 그 해결을 담당한다. 이는 해당 국가의 법원이 분쟁 해결에 전권을 행사함을 의미하나,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Popp, 2012). 그 조건이란 사고를 유발한 선박(유조선) 소유주의 책임범위설정이다. 유조선 소유주의 책임범위설정은 해당 선박의 톤수에 따라 국제협약이 정한 손해배상액수를 말하는 것으로, 사고를 일으킨 선박은 고의성 등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손해배상책임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1969년 채택된 해양오염손해배상민사협약(통상 약칭 CLC)으로서, 2000톤 이상의 선박소유주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등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보험사 기타 보증기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opp, 2012).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사협약은 1992년에 개정된 것으로 통상 1992 CLC로 명명되나 이하에서 별도의 경우가 아니면 CLC로 지칭하고자 한다.

CLC가 정한 책임제한으로 인해, 배상금액이 선주의 보험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선주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초과된 보상금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해 부담하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IOPC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IOPC기금으로 추가 지급되는 보상액에도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다. IOPC기금에 의한 보상금은 선주 또는 그 보험사가 지급한 보상액을 포함하여 선박의 톤수에 따라 정해진다(IOPC Funds, 2013).

선주와 선주보험사 및 IOPC기금만이 국제협약체제

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원천은 아니다. 국제유류오염 보상체제는 해양유류오염사고의 피해규모가 커지면서 2003년 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을 설치하였다. 이 보충기금의 가입 자격은 1992 IOPC기금의 회원국에 한정되며, 회원국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에 가입할 수 있다 (IOPC Funds, 2016). 이 보충기금은 CLC와 IOPC기금 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추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크게 증액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함으로써 보충기금가입은 허베이스피리트호의 보상에는 유효하지 않다.

이와 같이 국제유류오염보상체제는 보상 관련 전권을 해당 국가의 법원에 부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에서는 국제유류오염체계는 선주 및 보험사 그리고 IOPC기금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국내법원의 분쟁해결권한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국제유류오염보상체제의 손해배상한도설정 및 이에 따른 피해보상의 한계점에 대한 국가의 대응도 상이하다. 미국과 같이 1992년 IOPC기금에 불가입하고 자체적인 유류오염보상법제와 자체기금을 운영하면서 매우 강력한 손해배상보상체제를 운영하는 국가도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IOPC기금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국가도 있다.

2. 피해자와 피해금액의 결정

유류오염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개인, 회사, 정부일 수 있다.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국제협약들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국내법상 유류오염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법률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목적규정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피해자라는 용어는 있을 뿐 제2조의 정의규정에도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없다. 다만 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of 2006에서는 ‘피해자’를 정하는 규정이 새로이 추가되어, 발생한 손해의 성격에 따라서 국가를 포함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격을 피해자의 자격이 있다고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Alizade & Hosseini, 2013). IOPC의 Claim Manual에는 청구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청구권자에 개인, 파트너십, 기업, 민간조직 또는 공공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포함)을 포함하고 있다(IOPC Funds, 2013). 따라서 2009년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 피해자의 규정이 없지만 IOPC의 규정을 근거로 개인, 기업, 민간조직, 정부가 모두 피해자로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자격 여부는 국내법원에 의한 민사절차를 통해서 결정되게 된다.

유류오염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사고 선박 선주 및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그리고 IOPC기금에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오염피해에 대해서는 유류유출을 한 선박 등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무과실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따라서 유류오염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그 피해가 해당 선박 등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만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보상청구를 접수하게 되면 IOPC기금은 피해조사와 사정에 착수한다. IOPC기금이 피해여부 및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자체적인 피해보상매뉴얼(IOPC Funds, 2013)이 사용된다. 이 매뉴얼에는 피해보상절차와 함께 피해보상의 범위 및 산정기준 등이 정해져 있다. 이 피해보상매뉴얼의 국내법 귀속력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이의 국내법 귀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이를 참조로 삼는다. 그러나 IOPC기금이 피해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 매뉴얼을 따른다. 따라서 IOPC와 우리나라 법원의 보상금액사정 결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해보상청구를 받으면 선주는

CLC의 규정에 의거 선주손해배상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을 국내법원에 하게 된다. 선주책임제한절차는 사고 선박의 선주가 자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가입한 보험의 최대한도 내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사고를 유발한 선박의 선주가 동 절차에 의거하여 유한책임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법 제776조의 규정(책임제한의 절차)에 의거 채권자 즉 피해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이와 동시에 법원은 제한채권신청, 즉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의 신고기간을 정하고 신고된 피해에 대한 조사를 위한 조사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법원은 해당 유류오염손해배상에 대한 사정을 하는 사정재판을 하게 된다. 사정재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본심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선주손해배상책임제한 절차 신청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정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적격유무, 피해의 범위, 피해 규모 등을 판정한다. 따라서 유류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보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사정재판이다. 사정재판에서 피해의 범위와 피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 이는 사고의 유형과 피해의 성격 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IOPC기금은 앞서 말한 대로 보상매뉴얼을 갖고 있고 이에 준거하여 IOPC의 보상규모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국제기금 보상매뉴얼의 국내법 귀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여러 고려사항 중 하나로 IOPC기금 보상매뉴얼을 손해배상판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IOPC기금의 보상매뉴얼에서는 보상범위로 방제·예방조치 비용, 재산상의 손해, 수산업·양식업·가공업의 경제적 손실, 관광업의 경제적 손실, 순경제적손실 예방조치 비용, 환경피해 및 오염사고 후 연구비 등 6개 범주로 한정하고 각 범주별 산정기준 및 사례들을 정하고 있다(IOPC Funds, 201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사정재판에서는 신고된 피해청구(제한채권)에 대한 사정액과 함께 총배상·보상금액이 정해진다. 이 총액이 선박의 유한책임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IOPC기금에서 보상을 하고, 유한책임배상액과 IOPC기금 보상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금액은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IOPC기금의 한도사정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추가적 보상부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총배보상금액이 선박의 유한책임배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IOPC기금이나 우리나라 정부의 보상부담은 없게 된다.

IV.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소송과 주민갈등 분석

1. 소송 및 보상의 개관

허베이스피리트호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재판은 국내 검찰의 기소에 의해 법원이 불법행위의 존재 여부 및 존재하는 경우 불법 행위자의 규명, 불법행위에 대한 양형을 하는 것이다. 특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하였을 때 그것이 인위적 불법행위가 개입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의 고의 등에 의한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가 초점이 되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독립적으로 피해자나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시작되며,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 및 산정액을 정하는 것이 초점이 되었다.

1) 형사재판: 범죄의 구성에 관한 판결

형사재판은 형식적으로는 손해배상소송은 아니지만 재판이 지닌 '범죄행위의 구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정재판을 포함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와 삼성중공업에게 무한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형사재판은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과피,

선원범위반에 대한 심리로 이루어졌는데 2008년 6월 23일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원심, 동년 12월 10일 대전지법에서의 항소심, 2009년 4월 23일 대법원 상고심, 그리고 동년 6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에 이르는 1년여의 재판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와 삼성중공업에 대해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쌍방과실로 판결되었다. 대전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징역형, 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Table 1>과 같이 확정되었다.

상기 형사재판의 결과는 2008년 1월 21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및 기소내용과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대전지법검찰청 서산지청은 당시 “검찰은 과실 여부만 판단할 뿐 중과실 여부는 민사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사항”(Hankyoreh, 2008.01.21.)이라며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결과 및 기소장에서 관련자들의 과실비율에 대한 명시도 없고 중과실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으므로써,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보상과정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Hankyoreh, 2008.01.21.)도 제기되었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은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는 삼성중공업이 “침묵과 무대응”(Seoul Shinmun, 2008.01.19.)으로 일관한다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등 불만을 표하였다(Seoul Shinmun, 2008.01.22.). 더욱이 삼성중공업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담당 재판

부에 제출한 데 대해 태안지역 주민 측은 “검찰 수사결과조차도 뒤집겠다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Daejon Ilbo, 2008.02.01.). 이후 2008년 12월 5일 국토해양부 소속 해양안전심판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재결에서 그 원인을 ‘삼성예인단의 무리한 항해와 유조선의 소극적 대응’이라고 보아 삼성예인선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심판을 내렸다(Daejon Ilbo, 2008.12.05.).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이러한 재결에 대해 형사재판에서는 의견을 달리 하였다.

형사재판에 대한 피해지역주민들의 주된 관심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와 삼성중공업에 대한 고의성 등 중과실이 인정되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외에도 검찰의 발표에 대해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시나리오에 의한 고의적인 사고”라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Daily Chungchung, 2008.01.29.)되기도 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중공업의 예인선단에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무한책임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희망적인 입장을 보였다 (Daejon Ilbo, 2008.06.24.). 그러나 이후 서산지원에서 1심판결이 상급 법원에 의해 변경되고 파기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기도 했다. 피해주민들은 IOPC기금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제기한 구상권청구소송에 관심을 기울였다. IOPC기금은 유류유출사고의 원인을 ‘삼성중공업의 무모한 항해’

Table 1. Criminal justice rulings in the Hebei Spirit Oil Spill case

Factors	Daejeon District Court (Seosan Branch) (June 23, 2008)	Daejeon District Court (December 10, 2008)	Supreme Court (April 23, 2009)	Remand after Reversal Daejeon District Court (June 11, 2009)
Hebei Spirit Shipping Co.	Acquittal	Fine (30mil. won)	Fine (30mil. won)	
Hebei Spirit Ship Mater	Acquittal	Imprisonment(1.5yr) Fine (20mil. won)	Reversal	Fine (20mil. won)
Hebei Spirit Chief Officer	Acquittal	Imprisonment(8mon) Fine (10mil. won)	Reversal	Fine (10mil. won)
Samsung Heavy Engineering Co.	Fine (30mil. won)	Fine (30mil. won)	Fine (30mil. won)	
Samsung Tug(T-5) Master	Imprisonment (3yr) Fine (2mil won)	Imprisonment (2.5yr) Fine (2mil won)	Reversal	Imprisonment(2yr3mon)
Samsung Tug(T-3) Master	Imprisonment (1yr)	Imprisonment (8mon)		
Crane Vessel Master	Acquittal	Imprisonment (1.5yr)	Reversal	Imprisonment(1yr3mon)

※Source: Tae-an-kun(2010), (Park, 2013: 60).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13억 6,700만 위안(약 2,795억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중국닝보해사법원에 제기하였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중국선주보험사(P&I)도 같은 취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Seoul Shinmun, 2009.12.07.).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삼성중공업에 대한 국제기금과 선주 측의 구상소송에 대하여 중국 대법원은 IOPC기금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삼성중공업과 선주 측을 중재하여 삼성중공업이 선주 측에 1,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하였다(Korea Maritime Center, 2012).

이 밖에도 피해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 소송과 무관한 사건들도 있었다. 하나는 삼성중공업에 의한 지역발전금 출연이다. 2008년 3월 1일 삼성중공업은 태안에 피해보상금이 아닌 지역발전기금으로 1,000억 출연한다고 발표하였는데(Seoul Shinmun, 2008.03.01), 피해주민들로부터 “1년에 1조 원씩 적어도 5년간 지역발전기금을 내야”하는데 1,000억은 “턱없이 미흡한 조치”라는 격앙된 반응(Daejon Ilbo, 2008.03.01.)이 나왔다. 또 하나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인 2008년 7월 11일부터 삼성중공업이 벌인 자매결연사업이다. 삼성중공업은 “언론매체 및 태안군·지역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Taeon News, 2008.08.28. 보도, Ohmynews, 2008.08.31.에서 재인용) 태안지역주민들과 ‘1사 1어촌 자매결연’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자매결연을 찬성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으로 갈라지는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³⁾

2) 민사재판: 손해 배상·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한 판결

검찰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등과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 및 크레인선장에 대해 기소한 직후인 2008년

1월 15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측은 법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선주의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 삼성중공업은 상기 형사재판 2심판결이 내려지기 직전인 2008년 12월 5일 상법의 규정에 의거 선주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유조선인 허베이스피리트호와 달리 삼성중공업의 경우 사고 선박이 유조선이 아닌 선박이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에 의거 책임제한 여부가 판단된다. 삼성중공업은 2008년 2월 21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유조선에 의한 해상 오염은 유조선 측에서 일차로 배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과실 정도에 따라 유조선이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대응하면 된다”(Pressian, 2008.02.21.)라고 밝힘으로써,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및 국제기금의 구상권 청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와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각각 2009년 2월 9일과 2009년 3월 23일 양 신청자의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를 결정하였다.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신청 및 법원의 개시결정에 대해서 피해주민들의 비난이 매우 거세었다. 피해주민들은 “피해 지역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류 기업답지 않은 처사”(Hankyoreh, 2008.12.22.)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선주책임제한신청에 대해 동 법원은 고의적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법의 규정에 의거 선주의 유한책임을 인정하여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56억3,400백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소송에 임하였던 피해자들의 반발과 함께 주민갈등이 심화되었으나, 이 재판 결과 사고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국가의 제도 안으로

3) 찬성측은 “생계터전으로 일해왔던 바다가 오염돼 더 이상 (바다에서)수입을 얻을 수 없다. 삼성중공업과 자매결연을 통해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Taeon News, 2008.8.28. 보도, Ohmynews, 2008.8.31.에서 재인용)는 입장이었던데 반해, 반대측은 “현재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법원에 삼성중공업이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로 제출돼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냐”(Taeon News, 2008.8.28. 보도, Ohmynews, 2008.8.31.에서 재인용)는 입장이었다. 앞서 기술한 형사재판 판결문(예,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재판 2008고211)에서 반대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어떠한 언급도 없어 삼성중공업의 ‘1사1어촌 자매결연’ 노력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대부분 포섭되었다(Hong & Ku, 2009).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가 낸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의 근거가 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유류오염손해가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의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는 허베이 측의 배상범위와 총 배상액 규모를 정하는 사정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선주 측과 IOPC기금 측은 물론 피해어민들의 관심 그리고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2013년 1월 1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사정재판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총신고제한채권 127,471건 4조2,271억4,848만8,408원 중 중 신고채권의 49.6%인 63,201건, 신고금액의 17.4%인 7,360억7,401만1,587원을 인정하였다. 피해분야별로는 수산분야 약 3,726억 원, 비수산분야 약 427억 원, 방제분야 약 1,029억 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순위채권 약 2,179억 원이 인정되었다(〈Table 2〉). 사정재판에서 결정된 피해인정금액은 신고된 채권금액의 17.41%를 인정한 것으로서, 이는 2013년 1월 7일 IOPC기금이 발표한 사정금액 1,845억여 원(총신고채권의 4.36%)에 비해 약 4배나 많은 금액이었다. 서산지원의 사정금액이 IOPC기금의 사정금액과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어업생물의 폐사를 인정한 점, 조업제한조치로 인한 손해 기간을 전부 인정한 점, 비수산분야 손해발

생기가을 2008년 12월까지로 3개월 더 인정한 점, 무면허·무허가·미신고어업에 대해 위법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 후순위채권을 인정한 점 등이다. 이렇게 결정된 피해액에 대한 부담배분은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가 1,458억6,400만원(2013년 1월 10일자 환율기준) 범위에서 부담하고, 초과된 금액은 국제조약에 따라 IOPC기금이 3,298억4,860만원(2013년 1월 10일자 환율기준)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의 부담분과 IOPC기금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금액은 삼성중공업이 56억 원 그리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2008. 3. 14.)에 의거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정판결에 대해 IOPC기금 측은 2013년 2월 5일, 피해를 신고한 피해주민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본격적인 소송전이 진행되었다. 본 소송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1심은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의 선고가 있을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사정재판의 결정내용에 대해 IOPC기금은 과대계상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주민 측은 과소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 이의 제기를 하면서 민사소송 1심이 진행되었다.

사정재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불만

Table 2. Comparison of IOPC claims assessment and court decisions

(unit: cases, won, %)

	IOPC Fund (2013.1.7.)					Court (Seosan) (2013.1.16.)					D/A ¹⁾
	Claims		Assessment		B/A	Claims		Decision		D/C	
	Cases	Amount (A)	Cases	Amount (B)		Cases	Amount (C)	Cases	Amount (D)		
Total	128,400	2,775,283,557,271	57,014	184,464,136,498	6.65	127,471	4,227,148,488,408	63,201	736,074,011,587	17.41	26.52
Damages	128,339	2,163,556,581,080	57,006	180,247,337,128	8.33	127,436	3,633,621,963,390	63,167	518,200,345,230	14.26	23.95
Fisheries	110,333	1,605,361,820,925	53,831	48,059,847,641	2.99	110,896	2,214,541,084,561	57,180	372,551,384,567	16.82	23.21
Non-Fisheries	18,006	558,194,760,155	3,175	132,187,489,487	23.68	16,540	1,419,080,878,829	5,987	145,648,960,663	10.26	26.09
Junior Claims	61	611,726,976,191	8	4,216,799,370	0.69	35	593,526,525,018	34	217,873,666,357	36.71	35.62

※Sour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2).

(Kyunghyang Shinmun, 2013.01.16.), 분노(Korea Securities Dailynews, 2013.01.17.) 등으로 표출되었다. IOPC기금의 최종사정액 발표와 국내법원의 사정재판이 있기 훨씬 전 IOPC기금에서 피해보상규모를 4,240억 원이라 발표했을 때 “터무니 없는 규모”(Seoul Shinmun, 2008.03.10.)라고 반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정재판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이없는 결정이다”(Hankyoreh, 2013.01.16.), “이번 결정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Nongupin Shinmun, 2008.03.14; Kyunghyang Shinmun, 2013.01.16.)는 반응을 보였다. 사정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은 보상금의 과소를 넘어서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출되었다. 특히 관광 등 비수산분야 피해주민들의 경우 “국제기금의 입장이 대거 반영”(Kyunghyang Shinmun, 2013.01.16.)되었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관광 등 비수산분야에 대한 보상규모에 대해 수산업종의 피해자들은 다른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예컨대 선박어업자 측에서는 “1차적 직접적인 피해는 바다고 2차적 피해는 추상적인데 관광객이 줄었다 등의 이유로 펜션 같은 숙박업과 음식점 등에 피해 보상이 우선시 된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Daily Chungchung, 2016.02.25.)는 반응이었다. 업종과 연계하여 보상지역에 대한 불만도 표출되었다. 예컨대 태안지역 바다를 생업의 터로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데 대해 “태안어민들이 피해가 없다면 전라도 지역까지 배·보상의 포함을 시켰나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잣대가 적용된 것”(Daily Chungchung, 2016.02.25.)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배상금액이 크게 증가한 보령·서산·태안의 어민에 비해 손해인정액이 적거나 전무한 비수산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Hankyoreh, 2013.01.16.).

사정재판에 이은 본심판결에서 사정재판과 상이한 판결이 나오면서 피해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해당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불확실정을 더욱 키웠다.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사정재판에서 피해를 인정받은(22억 원)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어촌계 소속 어민 27명의 손해를 불인정하여 원고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와 IOPC기금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동 재판부는 사정재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당진지역 어민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사정재판과 같은 취지로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가곡어촌계 소속 어민은 같은 법원에서 내려진 사정재판과 1심 소송 판결이 다른 데 대해 “당혹스럽다”라는 반응과 함께 향후 유사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걱정스럽다”는 반응(Yonhap News, 2014.05.21.)을 보였다.

3) IOPC기금의 피해 사정과 정부의 대응

IOPC기금의 피해사정은 소송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국내 법원에서의 소송과정으로 인한 피해주민의 갈등에 영향을 주었다. 하나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IOPC기금의 보상매뉴얼 및 산정내용이 사정재판의 참고자료로 사용되면서 업종 간 갈등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IOPC기금 측의 몇 차례에 걸친 피해추정액 및 사정액의 발표가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기대와 좌절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끝으로 정부의 피해배상·보상에 대한 대응에서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첫 번째의 측면은 앞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측면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먼저 IOPC기금의 피해추정액 발표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IOPC기금측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발생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피해배상·보상액에 대한 추정치 및 확정치를 발표하였다. IOPC기금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사가 책임제한 절차개시 신청을 서산지원에 제출한 지 3일 뒤인 2008년 1월 18일 사무국장을 통해 “한국이 세계 최초로 최고 보상액인 3000억 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Seoul Shinmun, 2008.01.18.)는 발표를 하였다. 이후 IOPC기금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액으로 공식적으로 추정 발표한 총액수는 롤리코스트를 타는 형상을 보였다. 2008년 2월 최대 4,240억

(Seoul Shinmun, 2008.03.10.), 6월 최대 5,735억 원 (Hankyoreh, 2008.06.26.), 10월 6,013억 원 (Hankyoreh, 2008.10.15.)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10월 최대 6,150억 원에서 2009년 12월 5,770억 원 (Seoul Shinmun, 2009.12.07.)으로 감소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3년 12월 1,885억여 원으로 급감한 상태로 확정되었다.

IOPC기금의 사정금액 발표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반응은 “턱없이 부족하다”(Seoul Shinmun, 2008.03.10.), “객관성이 없다”(Daejon Ilbo, 2008.12.31.)는 것이었다. 정부나 삼성중공업에 대한 불만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규명하여 추가 비용을 삼성이 물게 하라”(Seoul Shinmun, 2008.03.10.), “국가가 선 보상하고 삼성에 대책 요구할 필요”(Hankyoreh, 2008.12.04.), “정부는 태안사건과 관련 특검을 실시해 사건 은폐 및 축소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초기 방재 실패 책임자를 가려 엄중 처벌해야 한다”(Daejon Ilbo, 2008.12.31.), “삼성, 태안발전기금 5000억으로 늘려라”(Seoul Shinmun, 2012.10.26.), “정부와 삼성은 상대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다”(Daejon Ilbo, 2011.12.08.),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Daejon Ilbo, 2015. 03.05.) 등이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에서 정부의 보상과 관련한 대응은 IOPC기금의 대응에 비교했을 때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정부는 사고 초기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상·보상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고, IOPC기금과 적극적으로 국내의 특수사정을 주장하고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맨손어업자들에 대해 지역별 피해정도와 정부통계, 과거 유사 보상사례, 위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배상을 하기로 국제유류보상기금(IOPC Fund) 측과 합의(Daejon Ilbo, 2008.12.11.)한 것이나, 비수산분야(관광분야) 피해산출에서 경기침체와 유가상승 등의 외부요인 기준을 배제하고 소득추계방식을 시범 적용하기로 추진케한 점(Daejon Ilbo, 2009.10.08.)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소극적이었다. 예컨대 2008년 12월 18일 개최된 태안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지원단 현지설명회에서 조사단은 “국제기금 보상기준 한도인 3000억 원 내에서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Daily Chungchung, 2007.12.18.)는 식의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피해규모에 대한 산정을 통해 IOPC기금으로부터 피해규모에 부합하는 보상금액을 요구하기 보다는 IOPC기금이 정하는 한도를 기정사실화 하였다. 정부가 체계적인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고 초기 방재 자체가 중요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피해규모를 산정하려는 정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사정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사고 발생 초기에 정부가 방제작업에만 치우쳐 피해 규모나 주민들의 어업 현황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Hankyoreh, 2013.01.16.). 정부의 피해조사노력의 미진함은 IOPC기금의 즉각적인 대처와 큰 차를 보인다. 2007년 12월 7일 사고가 발생하고 우리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방제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한 2007년 12월 8일 IOPC기금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보험사와 함께 피해조사를 위해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ation, 2012)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정부의 자체적인 보상매뉴얼이 불비하여 IOPC와 법원에 의한 사정과정에 의존하게 되면서 보상범위와 보상가능성에 대한 사전예측가능성을 피해주민들에게 주지 못한 것도 피해주민들의 갈등에 역할을 하였다. 유류유출사고 직후인 2007년 12월 18일 태안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지원단 현지설명회에서 주민들로부터 피해주역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었으나, 정치권에서 발의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2008년 2월에 들어서였다. 정부는 2008년 3월 14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허베이호법)을 제정

과 동시에 시행하여 소송과정을 단축시키고 IOPC기금과 법원의 판결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장하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주민의 배상·보상에 대한 사전예측가능성을 주기에는 미흡하였다.

V. 분석결과의 논의

피해보상체제는 원칙적으로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보전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지향한다. 피해보상체제가 이러한 지향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유발한 재난의 성격에 부합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이의 중요성은 본연구의 맥락이 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기술재난에서는 더욱 커진다.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기술재난에서는 배상·보상의 중층구조가 존재하여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감소할 수 있지만, 유류유출사고의 보상은 국내의 자체적인 보상체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경우 보상기간의 지체 및 보상금 사정을 둘러싼 갈등은 회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의 추정 규모가 국제보상체제의 한도를 넘는 경우 필연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기술재난에 특유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연루되면서 유류유출사고의 보상은 시간 소모적인 소송과정과 결합되어 지역에 상당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갈등에서 소송을 통한 보상체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지역주민의 갈등, 그리고 이에 따른 공동체부식현상에 대한 문헌은 이 부분은 주민 간 갈등 또는 공동체 유대 균열 등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한 시기와 범위(특정지역인지 전체지역인지 등)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Kim & Lee(2008)의 연구는 가의도에 한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생활고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직업적 동질성과 공동체적

유대감으로 주민들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결과는 Yun, *et. al.*(2010)에서도 뒷받침된다. 이와 달리 Park(2013)의 분석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해 주민 간 갈등 자체는 다른 집단 갈등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높지 않으나, 사고 전에 비해서 심각한 갈등상황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Lee & Yu(2010)의 연구에서도 이웃 간 사이의 소원함 등을 지적하였다. 심리학적 연구들 가운데는 주민들 사이에 심리적 고통의 존재를 제시한 연구결과들도 다수 있다. 그중에서도 20세 이상 태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Kim, *et. al.*(2012) 등은 태안지역에 대한 중시적 연구(사고 발생 2개월, 8개월, 20개월, 32개월)에서 여전히 주민들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증거와 함께, “실제 입은 피해정도와 정부가 지정한 피해등급(급지)의 차이가 있어서 보상이나 혜택이 있을 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불만이 많았음”(Kim, *et. al.*, 2012)을 말해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및 그와 관련된 보상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얼마나 소송과정과 관련되는지를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이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신문보도를 통해 노출된 소송과정과 지역주민 갈등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양자의 관계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plausible causal relations)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과요인들의 두 가지 범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상황적 범주이고 다른 하나는 내재적 범주이다. 상황적 범주는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과 공동체부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맥락에 관한 것이다. 내재적 범주는 소송 및 소송과정 자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소송당사자인 주민들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부식에 영향을 주는 소송요인들이다.

상황적 범주에는 추정 피해규모 대비 가용한 보상금의 규모, 추가적 보상 장치의 존재 및 적시성, 외부 정보의 과장된 기대, 보상 환경의 안정성, 사회집단에 대

한 신뢰 등이 포함된다. 첫째, 추정 피해규모 대비 가용한 보상금의 규모와 관련하여 보면, 정부가 비록 재난 지역 선포, 허베이특별법 제정 및 시행, IOPC기금과의 협의 등을 통해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한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추정되는 피해규모에 부합할 수 있는 보상가능성을 초기부터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보듯이 정부는 기존의 IOPC기금의 보상사례에 주로 토대하면서 대체로 IOPC기금의 보상사정의 엄밀성, 동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전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피해주민들 사이에 소송을 전후하여 제로섬의 갈등(Mayer, *et. al.*, 2015)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추가적 보상 장치의 존재 및 적시성의 결여도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보충기금 미가입상태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상을 위한 자금의 여유를 갖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상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주민들로부터 사고 유발자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의 '무한책임가능성'에 대한 힘든 기대에 더욱 매달리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의 결정에 대한 논의는 본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주민들은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나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대해 의심과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피해관련자들이 자기옹호적인 방식으로, 심지어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유발(Freudenburg & Jones, 1991)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셋째, 외부 정보의 과장된 기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은 소송초기 단계에서 외부의 정보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충되는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사고 직후의 보상에 대한 신문에 나타난 내용들은 몇 가지 특징들을 지닌다. '국제보상체계는 만만치 않다', '피해입증자료

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입증자료는 개개인들이 모두 준비하여야 한다',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입증가능', 'IOPC기금으로부터의 보상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다', '보상의 길이 열렸다' 등과 같이 피해주민들의 기대와 좌절을 유발하는 외부정보들에 피해자들이 노출되었던 것도 갈등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나타난다.

넷째, 보상 환경의 안정성이다. 정부의 추가적인 보상장치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거나 이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잡음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보상을 위한 소송에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Mayer, *et. al.*, 2015). 재난피해지역의 경우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히 높아 외부 자원,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Park, 2013; Lee & Bae, 2014)에서 정치적 요인들에 의한 보완적 자금 지급의 지연 등은 피해주민들이 소송에 더욱 의존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삼성중공업 등과 같이 사고의 당사자에 의한 자매결연사업이나 지역발전기금 출연제시 등도 보상 환경에 상당한 잡음을 유발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IOPC기금의 롤리코스 터식 추정 제시도 보상 환경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를 들 수 있다. 신뢰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존재하지만,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타인이 전문가적인 공정한 판단을 하여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타인을 믿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뢰의 중요성은 피해 및 보상 주체에 대한 인지적 갈등이 감정적 갈등으로 확산되는데 조절역할을 한다는데 있다(Parayitam & Dooley, 2007). 주민 간의 갈등보다는 주민과 사회 집단 사이의 갈등이 더 심하였다는 연구결과들(Park, 2013)에 토대할 때, 피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 특히 감정기반의 신뢰가 역할을 할 수 있다(Yang, 2009; Lee & Kwon, 2013).

내재적 범주에는 자료소명가능성, 보상기준, 소송에 대한 이해, 소송에 대한 만족 등을 포함한다. 첫째, 자

료소명의 가능성이다. 법원은 채증자료를 중심으로 법리를 해석한다(Picou, *et. al.*, 2004; Rosenbloom, *et. al.*, 2015)는 점에서 소송당사자가 자료로써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는 것은 필수이다. 그런데 기술재난 특히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피해범위의 광범위성,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소송당사자 개인이 소명 가능한 자료를 채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사고로 인한 충격 그리고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지역특성이 개재하는 경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서와 같이 생계를 위해 방제작업에 나서야 하는 피해주민입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초기부터 정부가 피해주민 개인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채증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수산업과 비수산업, 수협을 통한 거래자와 무자료거래자 등 사이에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료의 소명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료의 증거성 자체와 함께, 증거자료 수집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게 된다.

둘째, 보상기준 또는 보상매뉴얼의 존재이다. 법원의 재판을 통한 보상은 마음의 평화를 잃지만 보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이다(Issacharoff & Rave, 2013). 보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보상에서 상대적·절대적 차이로 인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함은 해외의 사례에서도 경험적으로 증거(Mayer, *et. al.*, 2015)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상의 기준이 존재하지 못하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 보상받을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 또는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사정재판의 결과와 1심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보상기준의 구비는 앞서 말한 자료소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보상기준의 존재는 피해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할지를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보상의 불확실성은 피해주민들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보상 간에 부정적인 사회적 비교를 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Mayer, *et. al.*, 2015).

셋째, 소송에 대한 이해이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요구된다. Picou(2009)는 Exxon Valdez Oil Spill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변호사들과 시간을 보내고, 평상시 알지도 못하던 복잡한 소송사안을 이해하여야 하고, 사고의 불행한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등의 소송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됨을 발견하였다.

넷째, 소송기간이다. 보상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소요되는 소송기간은 원고인 피해자들의 복지(well-bein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유류오염사고의 경우는 보통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이 수년에서 수십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상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을 담았다. 그럼에도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매우 다양한 이해관련자들이 연루되고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정과정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문헌은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이 피해자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증거가 더 우세하다(Elbers, *et. al.*, 2004). 그럼에도 보상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외상증후군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Cotti, *et. al.*, 2004, in Elbers, *et. al.*, 2004)도 있다. 소송에서 스트레스는 불가피하다(Miller & Bornstein, 2013)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기간은 소송피로, 보상피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소송 결과에 대한 만족이다. 소송 또는 보상이 피해주민의 회복을 지향한다고 하였을 때,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치유되고 지역주민 간 갈등도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자주 제시된다. 이에 대한 문헌의 증거는 상충된 증거를 보여준다.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이 보상과정 중에 있는 피해자들보다 더 건강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가하면 보상완료와 정신건강회복 사이의 상관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연구들도 있다(Elbers, *et. al.*, 2004). 본연구의 분석결

과 소송을 통한 보상판결에 대해 업종 간, 지역 간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연구(Park, 2013)나 미국의 엑스발데스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연구(Picou, 2009)에서나 보상금의 공정성, 보상금의 재정적 효용성 등에 대해 피해주민들의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와 업종과 상황에 따른 이견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엑스발데스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연구(Picou, 2009)는 피해주민들은 소송이 완결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가기 어렵고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사고를 잊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는 여전히 피해주민이 예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많음을 뜻한다(Rho, 2009; Lee & Yu, 2010; Lee & Kim, 2011).

VI. 결론

본 연구는 공식적인 피해보상체계에 초점을 두어 삼성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보상을 둘러싼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공식적인 피해보상체계로서 법원재판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는 신문에 보도된 관련 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문보도를 통해 노출된 소송과정과 지역주민갈등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양자의 관계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plausible causal relations)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과요인 2개 범주를 탐색적으로 도출하였다. 하나는 상황적 범주이고 다른 하나는 내재적 범주이다. 상황적 범주는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과 공동체부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맥락에 관한 것이다. 이 범주에는 추정 피해규모 대비 가용한 보상금의 규모, 추가적 보상 장치의 존재 및 적시성, 외부 정보의 과장된 기대, 보상 환경의 안정성,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 등이 포함되었다. 내재적 범주는 소송 및 소송과정 자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소송당사자인 주민들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

체부식에 영향을 주는 소송요인들이다. 이 범주에는 자료소명가능성, 보상기준, 소송에 대한 이해, 소송에 대한 만족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유류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발생 시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술재난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소송과정이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학술적 그리고 정책적인 함의를 지닌다. 학술적으로는 먼저 공동체부식현상에 대한 개념화를 위한 이론적 연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행정학, 정책학, 사회학, 심리학, 정신보건학 등에서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합한다면 공동체부식현상에 대한 개념화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법론적으로는 부식의 흐름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종시적 또는 시계열적 방법들의 사용이 확대된다면 과정적 현상으로서의 공동체부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단위로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공동체부식의 지속성, 속도, 확산방향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소송과정의 상황적·내재적 범주에 속하는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개발하는 것도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문헌 및 해외문헌에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논의들을 분석하는 문헌분석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헌분석연구를 통해 공동체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집합을 개발한다면 향후 소송과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소송에 대한 행정·정책적 관점에서의 연구도 진전될 필요가 있다.

정책실무면에서는 유류오염사고의 배상·보상관련 정부의 자체적인 정책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류오염사고의 배상·보상 관련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는 자체 기금의 마련과 보상기준 및 산정방식의 매뉴얼화이다. 정부의 보상기금의 설치의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 이는 정부가 국제협약이나

법원의 판결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또한 선제적으로 배상·보상의 여유를 갖고 방제활동, 피해복구활동 그리고 배상·보상행위를 함으로써 소송에 따른 공동체부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보상기준 및 산정방식의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보상기준은 IOPC의 보상매뉴얼과 헤베이스피리트호 사정판결 및 본판결에서의 판정결과를 토대로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상기준 및 산정방식의 매뉴얼화가 이루어진다면 더라도 모든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핵심적인 보상가능범위, 기준, 산정방식 등을 제시함으로써 소송에서의 예측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소송기간도 단축이 가능하고 국제협약과의 협상도 용이할 수 있다. 나아가 보상기준 및 산정방식을 매뉴얼화 하는 경우 배상·보상과정에 개입되는 정치인들이나 언론 등 외부의 상충되는 의견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소송과 공동체부식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구체적이고 질적(reality-rich)인 갈등상황이나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을 하지 않은 점은 본연구의 한계점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배상·보상과정이 공동체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소송관련 요인들을 도출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Alizade, M. and E. Hosseini. 2013. Litigation Procedure in Oil Pollution Inci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y*. 3(1): 5-8.
- Break News. 2016. Conflict over Oil Spill Compensation Yet to Be Ended. 2016.02.23.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30523.
- Chun, Kyoung Un 2008. A Study on Legal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Focused on Hebei Spirit's Oil Spill. *Environmental Law Review*. 30(2): 507-548.
- Daejon Ilbo. 2008. Victims Say "Died Twice." 2008.02.01.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39037.
- Daejon Ilbo. 2008. Meanings and Prospect of Taean Oil Spill Sentence. 2008.06.24.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63158.
- Daejon Ilbo. 2008. Samsung Tug More Responsible for Oil Spill. 2008.12.05.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91470.
- Daejon Ilbo. 2008. Unreported Fishery May Be Compensable. 2008.12.11.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92517.
- Daejon Ilbo. 2008. 7,000 Victims Going to Seoul for Protesting. 2008.12.31.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95993.
- Daejon Ilbo. 2011. Special Measures Needed for Compensating Oil Spill Damage. 2011.12.08.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82127.
- Daejon Ilbo. 2015. Appropriate Compensation Needed. 2015.03.05.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60337.
- Daily Chungchung. 2008. Victims Refuted Prosecutors' Decisions. 2008.01.29.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17>.
- Daily Chungchung. 2016. Already 8 Years Passed. 2016.02.25.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865>.
- Dixon, K. M., I. M. Shochet, and J. Shakespeare-Finch. 2015. Stress during the Rebuilding Phase Influenced Mental Health Following Two Queensland Flood Disasters More Than the Event Itself. *Paper Presented at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Disaster and Emergency Management Conference*. Queensland.
- Elbers, N., A. Akkermans, P. Cuijpers, and D. Bruinvels. 2012. What Do We Know about the Well-being of Claimants in Compensation Processes?. *Recht der Werkelijkheid*. 33(2): 65-78.
- Erikson, K. 1995. Notes on Trauma and Community. 183-199. In Cathy Caruth(ed.). *Trauma: Explorations in Memory*.

-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Freudenburg, W. R. 1997. Contamination, Corrosion and the Social Order: An Overview. *Current Sociology*. 45(3): 19-39.
- Freudenburg, W. R. and T. R. Jones. 1991. Attitudes and Stress in the Presence of Technological Risk. *Social Forces*. 69(4): 1143-1168.
- Friedman, L. M. 1989. Litigation and Socie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 17-29.
- Hankyoreh. 2008. Prosecutors Didn't Judge about the Gross Negligence. 2008.01.2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4564.html.
- Hankyoreh. 2008. The Maximum 573.5 Billion Won Estimated. 2008.06.26.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295693.html>.
- Hankyoreh. 2008. The Maximum 601.3 Billion Won Estimated. 2008.10.15.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16244.html>.
- Hankyoreh. 2008. Only 16 Billion Won Available for Compensation. 2008.12.0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5745.html.
- Hankyoreh. 2008. Samsung Heavy Industries Refused More Than 5 Billion Won. 2008.12.2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9120.html.
- Hankyoreh. 2013. Court Calculated the Amount of Damages. 2013.01.16.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0060.html>.
- Hong, Duk Hwa and Do Wan Ku. 2009. A Study on Social Conflicts by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s and Disorganization of Local Community. *ECO*. 13(1): 7-47.
- IOPC Funds. 2013. *Claims Manual*. <http://www.iopcfunds.org/>
- IOPC Funds. 2016. *Hebei Spirit Oil Spill*. <http://www.iopcfunds.org/incidents/>
- Issacharoff, S. and D. T. Rave. 2013. The BP Oil Spill Settlement and the Paradox of Public Litigation.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Series Working Paper No.13-20*. NYU Center for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 Kang, Yeon Sil, Dae Hyon Kim, and Jang Hoon Choi. 2011. A Study on the Assessment and Compensation for the Oil Spill Accident in Taean: Focused on the Hebei Spirit Accident. *Journal of Korean Island*. 23(2): 57-68.
- Kim, Do Kyun. 2015. The Long-term Social Impact of Environmental Disasters: The Scenes of the Fishing Village after 7 Years from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ECO*. 19(1): 97-130.
- Kim, Do Kyun and Jung Rim Lee. 2008. The Change in the Life of Island Residents after an Oil Spill Accident by the Hebei Spirit. *ECO*. 12(2): 119-152.
- Kim, In Hyeon. 2011. A Study on the Issues of Liability and Compensation in the Hebei Spirit Oil Pollution Accident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21(2): 593-622.
- Kim, Kyo Heon, Soo Hyun Kim, and Sun Jung Kwon. 2012. Changing Patterns of Psychological Maladaptive Symptoms after Hebei Spirit Oil Spill for Three Years: Focused on a Damaged Regional Comparis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4): 1045-1065.
- Korea Maritime Center. 2012. *IMO News &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s Trends*. 12-18. 2012.04.30.
- Korea Securities News. 2013. Victims Raged at Court Decision. 2013.01.17.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56>.
- Kyunghyang Shinmun. 2013. Court Set the Maximum 734.1 Billion for Damage. 2013.01.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62200365&code=940301.
- Lee, Ju Ho and Kyung Deuk Kwon. 2013.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of Trust on Cooperative Intent in Conflict Situations.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5(4): 195-218.
- Lee, Jung Rim and Do Kyun Kim. 2011. Variation of Vulnerability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f Residents Due to Oil Spill Accident of Hebei Spirit: Analysis of Panel Data after the Accident in Sep, 2008 and Oct, 2010. *ECO*. 15(2): 269-298.
- Lee, Jae Eun and Hyun Jung Yoo. 2010. Analyzing the Disaster Victim's Quality of Life in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6(2): 51-75.
- Marshall, B. K., J. S. Picou, and J. R. Schlichtmann. 2004. Technological Disasters, Litigation Stress, and the Use of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Law & Policy*. 26(2): 289-307.
- Mayer, B., K. Running, and K. Bergstrand. 2015. Compensation and Community Corrosion: Perceived Inequalities, Social Comparisons, and Competition Following the Deepwater Horizon Oil Spill. *Social Forum*. 30(2): 369-390.
- Miller, M. K. and B. H. Bornstein. 2013. Stress, Trauma, and Wellbeing in the Legal System: An Overview. 3-14. In Monica K. Miller and Brian H. Bornstein(eds.). *Stress, Trauma, and Wellbeing in the Legal System*.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ation. 2012. *Press Releas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and Main Development*. 2012.09.10.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2.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Report of Hebei Spirit Oil Spill. Claims and Compensation*. <http://www.mof.go.kr/content/view.do?menuKey=441&contentKey=65#none>.
- Nongupin Shinmun. 2008. How the Amount of Damages Was Calculated. 2008.03.14.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09>.
- Ohmynews. 2008. Sisters Relations with Samsung Upset Victims. 2008.08.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71304.
- Osofsky, H. M., K. Baxter-Kauf, B. Hammer, A. Mailander, B. Mares, A. Pikovsky, A. Witney, and L. Wilson. 2012.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BP Deepwater Horizon Oil Spill. 20 N.Y.U. *Environmental Law Journal*. 20: 99-198.
- Parayitam, S. and R. S. Dooley.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lict and Decision Outc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8(1): 42-73.
- Park, Jae Mook. 2008. From Risk Society to 'Responsibility Society': An Analysis on Social Responses to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ECO*. 12(1): 7-42.
- Park, Se Min. 2011. An Analysis on the Domestic Problems of Korea about Compensation of Oil Pollution Damage under Current IOPC Conven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Maritime Law Association*. 33(2): 187-228.
- Park, Sang Gyoo. 2013. An Empirical Study on Conflict Management in a Large Disaster Area: With Focus on the 2007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Ph.D.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 Picou, J. 2009. When the Solution Becomes the Problem. *University of St. Thomas Law Journal*. 7(1): 68-88.
- Picou, J. S., B. K. Marshall, and D. A. Gill. 2004. Disaster, Litigation, and the Corrosive Community. *Social Forces*. 82(4): 1493-1522.
- Popp, A. H. 2012. The Regime for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from Ships. Friday, 22 June 2012. *The Regulation of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Rethinking International Standards*.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alifax, Nova Scotia, Canada. June 21-22, 2012.
- Pressian. 2008. Prosecutors Reserved about of Negligence. 2008.02.2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87072>.
- Rho, Jin Chul. 2009. Cognition and Communication on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Life in Uncertainty: Focused on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ECO*. 13(1): 49-88.
- Rosenbloom, D. H., R. Kravchuk, and R. Clerkin. 2015. *Public Administration: Understanding Management, Politics, and Law in the Public Sector*. McGraw-Hill.
- Samnam Ilbo. 2016. Kimje and Gochang Should Be Compensated. 2016.10.14. <http://www.sam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2>.
- Seoul Shinmun. 2008. Maximum 300 Billion Won Possible. 2008.01.18.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118011006>.
- Seoul Shinmun. 2008. Legal Suits Unavoidable. 2008.01.1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122009010>.
- Seoul Shinmun. 2008. Taeon Victims at the "Protest of Death". 2008.01.1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119009010>.
- Seoul Shinmun. 2008. Government Provides 55.8 Billion for Support. 2008.01.2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121005008>.
- Seoul Shinmun. 2008. Samsung Contributes 100 Billion Won. 2008.03.0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301002018>.
- Seoul Shinmun. 2008. IOPC Estimated the Maximum 424 Billion

- Won. 2008.03.1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310001007>.
- Seoul Shinmun. 2009. Unauthorized Fishery Damage Not Compensable. 2009.12.0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207001008>.
- Seoul Shinmun. 2012. Samsung Should Increase up to 500 Billion Won. 2012.10.2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26010016>.
- Smith, K. and D. N. Petley. 2009. *Environmental Hazards: Assessing Risk and Reducing Disaster*. 5th Edition. New York: Routledge.
- Yang, Gi Geun. 2009. Enhancement of Community Preparedness for Hebei Spirit Oil Spillage Accident: The Strategy of Building Social Capital for Sustainable Disaster Management.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9(4): 54-60.
- Yonhap News. 2014. Alleged Victims in Dangjin and Sochun Areas Defeated. 2014.05.21.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5/21/0702000000AKR20140521109200063.HTML>.
- Yun, Hyo Young. 2008. Study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Concerning Oil Pollution Damage. *Hallym Law FORUM*. 19: 43-65.
- Yun, Sun Jin, Jae Yeol Yee, and In Kwan Jung. 2010. Impacts of a Disaster on Fishing Village: A Case Study of Hebei Sprit Oil Spill Incident. *2010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ological Association*. 593-603.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연실, 김대현, 최장훈. 2011.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사정 및 보상사례 분석연구: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대상으로. *한국도서연구*. 23(2): 57-68.
- 경향신문. 2013. 법원 “태안기름유출 7341억 보상”. 피해주민들 “너무적다” 소송준비. 2013년 1월 16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62200365&code=940301.
- 국토교통부. 2012. 보도자료: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및 주요 경과. 2012년 9월 10일자. http://www.molit.go.kr/USR/mof_policyData/m_35302/dtl?id=252.
- 김교현, 김수현, 권선중. 2012.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후 3년간의 심리적 부적응 증상 변화추세: 피해 지역별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4): 1045-1065.
- 김도균, 이정립. 2008.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섬 주민들의 삶의 변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12(2): 119-152.
- 김도균. 2015. 환경재난의 장기적 사회영향. *환경사회학연구 ECO*. 19(1): 97-130.
- 김인현. 201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 및 보상의 쟁점과 개선방안. *경영법률*. 21(2): 593-622.
- 노진철. 2009. 고도 불확실성의 재난상황에서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인지와 소통: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49-88.
- 농업인신문. 2008. “무슨 근거로 피해액 산출했나”. 2008년 3월 14일자.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09>.
- 대전일보. 2008. “피해주민들 두번 죽이려 하나”. 2008년 2월 1일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39037.
- 대전일보. 2008. 태안 기름유출 사고 1심 선고 의미·전망. 2008년 6월 24일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63158.
- 대전일보. 2008. 태안 기름유출사고 “초기 대응 못한 삼성 예인선 책임 커”. 2008년 12월 5일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91470.
- 대전일보. 2008. 농식품부, 맨손어업도 배상 추진. 2008년 12월 11일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92517.
- 대전일보. 2008. ‘기름 유출 1년’ 태안 주민 7000여명, 대규모 상경집회. 2008년 12월 31일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95993.
- 대전일보. 2011.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 특단 대책을”. 2011년 12월 8일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82127.
- 대전일보. 2015. “허베이 기름유출 사고 정당한 보상”. 2015년 3월 5일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60337.
- 박상규. 2013. 대형 재난지역의 갈등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2007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세민. 2011. 현행 IOPC 국제기금협약 체계하에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한국해법학회지. 33(2): 187-228.
- 박재목. 2008. 환경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12(1): 7-42.
- 브레이크뉴스. 2016. 끝나지 않은 충남 태안 유류피해보상금 갈등. 2016년 2월 23일자.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30523.
- 삼남일보. 2016. “태안 원유 유출 보상지역 김제, 고창 포함시켜야”. 2016년 10월 14일자. <http://www.sam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2>.
- 서울신문. 2008. “태안 보상 규모 최대 3000억 원”. 2008년 1월 18일자.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118011006>.
- 서울신문. 2008. 과실 비율 싸고 법정공방 불가피. 2008년 1월 19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122009010>.
- 서울신문. 2008. 태안 주민들 ‘죽음의 시위’. 2008년 1월 19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119009010>.
- 서울신문. 2008. 태안 생계비 558억 푼다. 2008년 1월 21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121005008>.
- 서울신문. 2008. 삼성중 태안에 기금 1000억. 2008년 3월 1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301002018>.
- 서울신문. 2008. IOPC “태안피해액 최대 4240억원” 주민·시민단체 “수조원”...협상난항. 2008년 3월 10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310001007>.
- 서울신문. 2009. “무허가 어업 보상 제외” 피해액 380억 깎였다. 2009년 12월 7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207001008>.
- 서울신문. 2012. “삼성, 태안발전기금 5000억으로 늘려라”. 2012년 10월 26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26010016>.
- 양기근. 2009.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의 재난지역 공동체의 재난대비 강화 방안: 지속가능 재난관리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한국방재학회지. 9(4): 54-60.
- 연합뉴스. 2014. 태안 기름유출 피해 민사소송 1심 선고 본격화. 2014년 5월 21일자.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5/21/0702000000AKR20140521109200063.HTML>.
- 오마이뉴스. 2008. 삼성과 ‘자매’ 되는 태안, 심란한 주민들. 2008년 8월 28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71304.
- 윤순진, 이재열, 정인관. 2010. 재난이 어촌공동체에 미친 영향: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사례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93-603.
- 윤희영. 2008. 유류오염 손해배상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및 그 상호관계. 한림법학 FORUM. 19: 43-65.
- 이재은, 유현정. 2010.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6(2): 51-75.
- 이정림, 김도균. 2011.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피해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취약성 변수. 환경사회학연구 ECO. 15(2): 269-298.
- 이주호, 권경득. 2013. 갈등 상황에서 협력의지에 미치는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4): 195-218.
- 전경운. 2008. 해양유류오염사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적 문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30(2): 507-548.
- 충청신문. 2008. 태안 주민들 검찰수사 결과 반박. 2008년 1월 29일자.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17>.
- 충청일보. 2016. 벌써 8년... ‘검은 눈물’ 얼마나 닦였나?. 2016년 2월 25일자.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865>.
- 프레스리안. 2008. 검찰 “삼성중 ‘중과실’ 판단 유보”...삼성 “불만 없어”. 2008년 2월 21일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87072>.
- 한겨레. 2008. 검찰, 삼성중공업 중과실 판단 안해. 2008년 1월 21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4564.html.
- 한겨레. 2008. “태안 기름유출 피해액 최대 5735억원”. 2008년 6월 26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295693.html>.
- 한겨레. 2008. 태안 기름유출 피해 추정액 ‘최대 6013억’. 2008

- 년 10월 15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16244.html>.
- 한겨레. 2008. 보상금 지급 고작 160억...‘태안의 눈물’ 언제까지. 2008년 12월 4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5745.html.
- 한겨레. 2008. “태안배상 50억만” 삼성중공업의 배짱. 2008년 12월 22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9120.html.
- 한겨레. 2013. 법원, 태안 기름사고 5년여만에 배상액 산정했지만... 2013년 1월 16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0060.html>.
- 한국증권신문. 2013. 태안기름유출사고 판결...주민 분노 2013년 1월 17일자.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56>.
- 한국해사센터. 2012. IMO 소식 & 국제해사동향. 제12-18호. 2012년 4월 30일자.
- 해양수산부. 201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청구 및 보상현황. 2012년 9월 10일자. <http://www.mof.go.kr/content/view.do?menuKey=441&contentKey=65#none>.
- 홍덕화, 구도완.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로 인한 사회갈등: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환경사회학연구*. 13(1): 7-47.

Received: Nov. 8, 2016 / Revised: Dec. 6, 2016 / Accepted: Dec. 16, 2016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보상 소송과정의 지역사회부식화 탐색적 연구

–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식적인 피해보상체계에 초점을 두어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보상을 둘러싼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공식적인 피해보상체계로서 법원재판에 초점을 맞추고자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는 신문에 보도된 관련 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문보도를 통해 노출된 소송과정과 지역주민갈등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양자의 관계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plausible causal relations)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과요인 2개 범주-상황적 범주와 내재적 범주-를 탐색적으로 도출하였다. 상황적 범주에는 추정 피해규모 대비 가용한 보상금의 규모, 추가적 보상 장치의 존재 및 적시성, 외부 정보의 과장된 기대, 보상 환경의 안정성,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 등이 포함되었다. 내재적 범주에는 자료소명가능성, 보상기준, 소송에 대한 이해, 소송에 대한 만족 등을 포함하였다. 지역사회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배상·보상 소송의 상황적·내재적 요인들과 관련한 학술적·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소송, 피해배상·보상

Profiles **Younghoon Choi** : He is a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He received his doctoral degree from Syracuse University in 1996. He is currently interested in government-people rel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government and information policy, and health policy. His recent works have appeared in *Administration & Society*,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and other academic journals(cyhoon@kw.ac.kr).

Dong Hwa Lee : He is a doctoral candidate at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His research interest is in environmental policy (ybj@bok.or.kr).